

서울특별시 광진구
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를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5년 10월 3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서 3만 명 미만인 동은 25인 이내로, 3만 명 이상인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- ⑧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⑨ 제8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.
- 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⑪ 분과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중에 있는 위원장 중 2회 연임중인 위원장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며 그 외 위원장과 위원·고문은 시행되는 조례에 따른다.

<신 · 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,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⑧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서 3만 명 미만인 동은 25인 이내로, 3만 명 이상인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⑨ 제8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.</p> <p>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⑪ 분과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</p>